

# 서울특별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957
----------	-----------

제안년월일 : 2016년 2월 25일

제안자 : 환경수자원위원장

## 1. 수정이유

- 별표 신설보다는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관리해야 하는 근거조항을 신설하고, 권고기준은 관리지침을 따르도록 하는 것으로 수정·보완하는 것임.

## 2. 주요 골자

- 안 제16조제3항, 안 제16조제4항, 안 별표 4를 각각 삭제함.
-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를 신설함.  
(제16조의2)

## 3. 참고사항: 생략

# 서울특별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16조제3항, 안 제16조제4항, 안 별표4를 각각 삭제한다.

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6조의2(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관리) ① 시장은 대중교통차량의 운송사업자에게 「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」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대중교통차량의 제작 또는 운행 등에 관한 관리지침(이하 “관리지침”이라 한다)에 맞게 대중교통차량을 운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대중교통차량의 제작자 또는 운송사업자에게 관리지침에 따른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유지·관리에 필요한 기술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## 수정안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							
<p>제16조(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의 설정) ① ~ ② (생략)  <span style="margin-left: 100px;">〈신설〉</span></p>	<p>제16조(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의 설정) ① ~ ② 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          ③ 시장은 「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」 제9조의2 제3항에 의한 관리지침에 맞게 대중교통차량을 운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.                    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은 별표4와 같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<span style="margin-right: 20px;">〈신설〉</span></p>	<p>제16조(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의 설정) ① ~ ② (현행과 같음)  <span style="margin-left: 100px;">〈삭제〉</span>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<span style="margin-right: 20px;">〈삭제〉</span></p> <p><u>제16조의2(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관리) ① 시장은 대중교통차량의 운송사업자에게 「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」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대중교통차량의 제작 또는 운행 등에 관한 관리지침(이하 “관리지침”이라 한다)에 맞게 대중교통차량을 운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.</u>  <u>② 시장은 대중교통차량의 제작자 또는 운송사업자에게 관리지침에 따른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유지·관리에 필요한 기술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</u></p>							
<p>[별표 1~3] (생략)  <span style="margin-left: 100px;">〈신설〉</span></p>	<p>[별표 1~3] (현행과 같음)  <u>[별표 4]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(제16조 관련)</u>                      1. 이산화탄소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margin-top: 5px;"> <tr> <td style="width: 30%; text-align: center;">대중교통</td> <td colspan="2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권고기준</td> <td rowspan="2" style="text-align: center; vertical-align: middle;">비고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차량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비혼잡시간대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혼잡시간대</td> </tr> </table>	대중교통	권고기준		비고	차량	비혼잡시간대	혼잡시간대	<p>[별표 1~3] (개정안과 같음)  <span style="margin-left: 100px;">〈삭제〉</span></p>
대중교통	권고기준		비고						
차량	비혼잡시간대	혼잡시간대							

도시철도	2,000ppm 이하	2,500ppm 이하	노선 1회 운행 시
철도 시외버스	2,000ppm 이하	2,500ppm 이하	평균값으로 평가

비고 1. “노선 1회 운행 시 평균값” 이란 해당 대중교통차량 운영주체 별 소속차량의 각 노선의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연속 측정값의 평균값을 말한다. 이하 같다.

2. 혼잡시간대는 도시철도의 경우 주중 07시 30분부터 09시 30분까지 또는 18시부터 20시까지를, 철도 및 시외버스의 경우 주말이나 휴일 또는 성수기를 말하며, 비혼잡 시간대는 혼잡시간대 외의 시간대를 말한다. 이하 같다.

## 2. 미세먼지

대중교통 차량	권고기준	비 고
도시철도	200 $\mu$ g/m <sup>3</sup>	노선 1회 운행 시
철도 시외버스	150 $\mu$ g/m <sup>3</sup>	평균값으로 평가

## 서울특별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6조의2(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관리) ① 시장은 대중교통차량의 운송사업자에게 「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」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대중교통차량의 제작 또는 운행 등에 관한 관리지침(이하 “관리지침”이라 한다)에 맞게 대중교통차량을 운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대중교통차량의 제작자 또는 운송사업자에게 관리지침에 따른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유지·관리에 필요한 기술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     행	개    정    안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〈신 설〉</p>	<p>제16조의2(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관리) ① 시장은 대중교통차량의 운송사업자에게 「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」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대중교통차량의 제작 또는 운행 등에 관한 관리지침(이하 “관리지침”이라 한다)에 맞게 대중교통차량을 운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.</p> <p>② 시장은 대중교통차량의 제작자 또는 운송사업자에게 관리지침에 따른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유지·관리에 필요한 기술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</p>